

제 27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운영위원회 제 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9. 1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0년 9월 17일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64
- 나. 제 출 자: 송순효 의원 외 5명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6월 5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6월 10일

2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절차에 필요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함.
- 나.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선임 절차 규정(안 제2조)
- 다. 대표 검사위원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
라. 감사위원의 해임, 직무, 제재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4조~제6조)

마.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제공 및 협조의무를 규정함.(안 제7조)

바. 결산감사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을 규정함.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2조, 제83조, 제8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0. 6. 5. ~ 6. 9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‘결산승인’을 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134조에서는 결산의 구체적인 사항을, 시행령 제83조에서는 감사위원의 정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.

현재 시행 중인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감사위원회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」의 제명변경, 위원정수, 위원의 자격요건, 감사위원회에 대한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·답변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나. 검토 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으로

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였고,

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'5인'으로 하고, 검사위원 지역요건과 경력요건을 현재 시행 중인 조례보다 강화하여 전문적이면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※ 주요 개정내용 비교표 참고

또한, 본회의와 위원회 요구 시 검사위원의 출석·답변의무, 실비보상 규정을 명확화 하였음.

○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

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과 거주지(근무지) 제한을 강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, 강서구 사정에 밝은 결산검사위원 위촉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,

과도한 제한조건 및 출석의무 부과 등은 상반기 기업체 세무·회계 수요와 맞물려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□ 주요 개정내용 비교표

	기존 안	전부개정 안
위원 정수	3인이상 5인 이내	5인
의원인 감사위원 수	규정없음	위원 정수의 3분의1이내 (1명)
의원이 아닌 위원 자격제한1	서울시 거주	강서구 거주 또는 근무
의원이 아닌 위원 자격제한2	회계사, 세무사 등 2년 이상	회계사, 세무사 등 3년 이상
의원이 아닌 위원 자격제한3	서울시(자치구 포함) 예산·회계 관련경력 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	서울시(자치구 포함) 예산·결산 관련 3년이상 경력 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
의회출석	본회의	본회의, 위원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14.>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2조(결산 승인)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1. 12.>

1. 결산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